# 더샵 프리엘라 입주자모집 정정 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 – 2636 - 0324

※ **(기존)**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서 **(정정) 미성년자녀 3명 이상으로 정정 공고 합니다.**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민영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br>(2024.03.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br>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10년 | 3년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 |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 | | |
| 일정 | 26.03.12.(목) | 26.03.23.(월) | 26.03.24.(화) | 26.03.25.(수) | 26.03.26.(목) | 26.04.01.(수) | 26.04.02.(목)~<br>26.04.09.(목) | 26.04.13.(월)~<br>26.04.15.(수) |

##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은 최초 계약자(수분양자)는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최초 공급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를 득해야 합니다. 당 사업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 대상의 토지면적(대지지분)이 6㎡ 초과일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본 아파트의 전 주택형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소유권 행사(전매, 매매, 의무거주기간, 주택처분 등)에 제한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가입 |

| | | | | | | | |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br>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br>(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더샵프리엘라.kr** 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APT | O | |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12.(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4.03.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 | | |
| 일 정 | 26.03.23.(월) | 26.03.24.(화) | 26.03.25.(수) | 26.03.26.(목) | 26.04.01.(수) | 26.04.02.(목)~<br>26.04.09.(목) | 26.04.13.(월)~<br>26.04.15.(수) |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br>(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10 더샵갤러리)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 10년 |

**※ (예외1)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2)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예외3)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구분 | | 처리방법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br>※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4.01.)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 2025.10.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건축사업과 – 3295 호(2026.03.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1층 6개동 총 324세대 중 일반분양 138세대**
**[특별공급 75세대(기관추천 14세대, 다자녀가구 14세대, 신혼부부 31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9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2026000023 | 01 | 044.9800 | 44 | 44.9800 | 15.6280 | 60.6080 | 45.1110 | 105.7190 | 19.6380 | 14 | 2 | - | 3 | - | 1 | 6 | 8 | - |
| | 02 | 059.9700A | 59A | 59.9700 | 20.3670 | 80.3370 | 60.1460 | 140.4830 | 26.0310 | 18 | 1 | 2 | 8 | 1 | 2 | 14 | 4 | 2 |
| | 03 | 059.9900B | 59B | 59.9900 | 20.1720 | 80.1620 | 60.1650 | 140.3270 | 25.9740 | 10 | 2 | 1 | 1 | - | 1 | 5 | 5 | 1 |
| | 04 | 059.9900C | 59C | 59.9900 | 20.5720 | 80.5620 | 60.1650 | 140.7270 | 26.1040 | 9 | 1 | - | 2 | - | 1 | 4 | 5 | 1 |
| | 05 | 074.9900A | 74A | 74.9900 | 24.0930 | 99.0830 | 75.2080 | 174.2910 | 32.1050 | 30 | 3 | 2 | 7 | 1 | 2 | 15 | 15 | 3 |
| | 06 | 074.9900B | 74B | 74.9900 | 25.4930 | 100.4830 | 75.2090 | 175.6920 | 32.5590 | 13 | 1 | 1 | 2 | - | 1 | 5 | 8 | 1 |
| | 07 | 084.9900A | 84A | 84.9900 | 26.8140 | 111.8040 | 85.2380 | 197.0420 | 36.2270 | 33 | 3 | 5 | 6 | 1 | 3 | 18 | 15 | 6 |
| | 08 | 084.9800B | 84B | 84.9800 | 27.5210 | 112.5010 | 85.2280 | 197.7290 | 36.4530 | 11 | 1 | 3 | 2 | 1 | 1 | 8 | 3 | 1 |
| | 합 계 | | | | | | | | | 138 | 14 | 14 | 31 | 4 | 12 | 75 | 63 | 15 |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참고하십시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 및 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이 필요한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세대별 공급금액이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44.9800 | 059.9700A | 059.9900B | 059.9900C | 074.9900A | 074.9900B | 084.9900A | 084.9800B |
|---|---|---|---|---|---|---|---|---|
| 약식표기 (타입) | 44 | 59A | 59B | 59C | 74A | 74B | 84A | 84B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십시오.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약식 표기 (타입) | 동/호 구분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계약후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 | | | | | (계약시) | 30일이내 | 2026.11.02 | 2027.04.01 | 2027.09.01 | 2028.02.01 | 2028.07.03 | 2028.12.01 | |
| 44A | 101동 1,2호 | 3 | 2 | 601,561,000 | 240,962,000 | 842,523,000 | 30,000,000 | 54,252,300 | 84,252,300 | 84,252,300 | 84,252,300 | 84,252,300 | 84,252,300 | 84,252,300 | 252,756,900 |
| | | 5 | 1 | 618,622,000 | 247,796,000 | 866,418,000 | 30,000,000 | 56,641,800 | 86,641,800 | 86,641,800 | 86,641,800 | 86,641,800 | 86,641,800 | 86,641,800 | 259,925,400 |
| | | 6~14층 | 6 | 627,468,000 | 251,340,000 | 878,808,000 | 30,000,000 | 57,880,800 | 87,880,800 | 87,880,800 | 87,880,800 | 87,880,800 | 87,880,800 | 87,880,800 | 263,642,400 |
| | | 15층 이상 | 5 | 631,892,000 | 253,111,000 | 885,003,000 | 30,000,000 | 58,500,300 | 88,500,300 | 88,500,300 | 88,500,300 | 88,500,300 | 88,500,300 | 88,500,300 | 265,500,900 |
| 59A | 101동4호 106동2호 | 2 | 2 | 872,774,000 | 349,599,000 | 1,222,373,000 | 50,000,000 | 72,237,300 | 122,237,300 | 122,237,300 | 122,237,300 | 122,237,300 | 122,237,300 | 122,237,300 | 366,711,900 |
| | | 3 | 1 | 883,915,000 | 354,062,000 | 1,237,977,000 | 50,000,000 | 73,797,700 | 123,797,700 | 123,797,700 | 123,797,700 | 123,797,700 | 123,797,700 | 123,797,700 | 371,393,100 |
| | | 4 | 1 | 895,986,000 | 358,897,000 | 1,254,883,000 | 50,000,000 | 75,488,300 | 125,488,300 | 125,488,300 | 125,488,300 | 125,488,300 | 125,488,300 | 125,488,300 | 376,464,900 |
| | | 5 | 2 | 908,984,000 | 364,104,000 | 1,273,088,000 | 50,000,000 | 77,308,800 | 127,308,800 | 127,308,800 | 127,308,800 | 127,308,800 | 127,308,800 | 127,308,800 | 381,926,400 |
| | | 6~14층 | 6 | 921,983,000 | 369,311,000 | 1,291,294,000 | 50,000,000 | 79,129,400 | 129,129,400 | 129,129,400 | 129,129,400 | 129,129,400 | 129,129,400 | 129,129,400 | 387,388,200 |
| | | 15층 이상 | 6 | 928,482,000 | 371,914,000 | 1,300,396,000 | 50,000,000 | 80,039,600 | 130,039,600 | 130,039,600 | 130,039,600 | 130,039,600 | 130,039,600 | 130,039,600 | 390,118,800 |
| 59B | 101동3호 | 2 | 1 | 844,746,000 | 338,373,000 | 1,183,119,000 | 50,000,000 | 68,311,900 | 118,311,900 | 118,311,900 | 118,311,900 | 118,311,900 | 118,311,900 | 118,311,900 | 354,935,700 |
| | | 3 | 1 | 855,530,000 | 342,692,000 | 1,198,222,000 | 50,000,000 | 69,822,200 | 119,822,200 | 119,822,200 | 119,822,200 | 119,822,200 | 119,822,200 | 119,822,200 | 359,466,600 |
| | | 4 | 1 | 867,213,000 | 347,372,000 | 1,214,585,000 | 50,000,000 | 71,458,500 | 121,458,500 | 121,458,500 | 121,458,500 | 121,458,500 | 121,458,500 | 121,458,500 | 364,375,500 |
| | | 5 | 1 | 879,794,000 | 352,411,000 | 1,232,205,000 | 50,000,000 | 73,220,500 | 123,220,500 | 123,220,500 | 123,220,500 | 123,220,500 | 123,220,500 | 123,220,500 | 369,661,500 |
| | | 6~14층 | 6 | 892,375,000 | 357,451,000 | 1,249,826,000 | 50,000,000 | 74,982,600 | 124,982,600 | 124,982,600 | 124,982,600 | 124,982,600 | 124,982,600 | 124,982,600 | 374,947,800 |
| 59C | 106동3호 | 2 | 1 | 848,961,000 | 340,061,000 | 1,189,022,000 | 50,000,000 | 68,902,200 | 118,902,200 | 118,902,200 | 118,902,200 | 118,902,200 | 118,902,200 | 118,902,200 | 356,706,600 |
| | | 4 | 1 | 871,540,000 | 349,105,000 | 1,220,645,000 | 50,000,000 | 72,064,500 | 122,064,500 | 122,064,500 | 122,064,500 | 122,064,500 | 122,064,500 | 122,064,500 | 366,193,500 |
| | | 5 | 1 | 884,184,000 | 354,170,000 | 1,238,354,000 | 50,000,000 | 73,835,400 | 123,835,400 | 123,835,400 | 123,835,400 | 123,835,400 | 123,835,400 | 123,835,400 | 371,506,200 |
| | | 6~14층 | 5 | 896,828,000 | 359,235,000 | 1,256,063,000 | 50,000,000 | 75,606,300 | 125,606,300 | 125,606,300 | 125,606,300 | 125,606,300 | 125,606,300 | 125,606,300 | 376,818,900 |

| | | | | | | | | | | | | | | | | |
|---|---|---|---|---|---|---|---|---|---|---|---|---|---|---|---|---|
| 59C | | 15층<br>이상 | 1 | 903,150,000 | 361,767,000 | 1,264,917,000 | 50,000,000 | 76,491,700 | 126,491,700 | 126,491,700 | 126,491,700 | 126,491,700 | 126,491,700 | 126,491,700 | 126,491,700 | 379,475,100 |
| 74A | 102동1호<br>102동3호<br>106동1호 | 2 | 3 | 1,011,842,000 | 405,305,000 | 1,417,147,000 | 50,000,000 | 91,714,700 | 141,714,700 | 141,714,700 | 141,714,700 | 141,714,700 | 141,714,700 | 141,714,700 | 141,714,700 | 425,144,100 |
| | | 3 | 3 | 1,024,760,000 | 410,479,000 | 1,435,239,000 | 50,000,000 | 93,523,900 | 143,523,900 | 143,523,900 | 143,523,900 | 143,523,900 | 143,523,900 | 143,523,900 | 143,523,900 | 430,571,700 |
| | | 4 | 3 | 1,038,754,000 | 416,084,000 | 1,454,838,000 | 50,000,000 | 95,483,800 | 145,483,800 | 145,483,800 | 145,483,800 | 145,483,800 | 145,483,800 | 145,483,800 | 145,483,800 | 436,451,400 |
| | | 5 | 3 | 1,053,824,000 | 422,120,000 | 1,475,944,000 | 50,000,000 | 97,594,400 | 147,594,400 | 147,594,400 | 147,594,400 | 147,594,400 | 147,594,400 | 147,594,400 | 147,594,400 | 442,783,200 |
| | | 6~14층 | 15 | 1,068,893,000 | 428,157,000 | 1,497,050,000 | 50,000,000 | 99,705,000 | 149,705,000 | 149,705,000 | 149,705,000 | 149,705,000 | 149,705,000 | 149,705,000 | 149,705,000 | 449,115,000 |
| | | 15층<br>이상 | 3 | 1,076,429,000 | 431,175,000 | 1,507,604,000 | 50,000,000 | 100,760,400 | 150,760,400 | 150,760,400 | 150,760,400 | 150,760,400 | 150,760,400 | 150,760,400 | 150,760,400 | 452,281,200 |
| 74B | 102동4호 | 2 | 1 | 995,355,000 | 398,701,000 | 1,394,056,000 | 50,000,000 | 89,405,600 | 139,405,600 | 139,405,600 | 139,405,600 | 139,405,600 | 139,405,600 | 139,405,600 | 139,405,600 | 418,216,800 |
| | | 3 | 1 | 1,008,062,000 | 403,790,000 | 1,411,852,000 | 50,000,000 | 91,185,200 | 141,185,200 | 141,185,200 | 141,185,200 | 141,185,200 | 141,185,200 | 141,185,200 | 141,185,200 | 423,555,600 |
| | | 4 | 1 | 1,021,828,000 | 409,304,000 | 1,431,132,000 | 50,000,000 | 93,113,200 | 143,113,200 | 143,113,200 | 143,113,200 | 143,113,200 | 143,113,200 | 143,113,200 | 143,113,200 | 429,339,600 |
| | | 5 | 1 | 1,036,652,000 | 415,242,000 | 1,451,894,000 | 50,000,000 | 95,189,400 | 145,189,400 | 145,189,400 | 145,189,400 | 145,189,400 | 145,189,400 | 145,189,400 | 145,189,400 | 435,568,200 |
| | | 6~14층 | 9 | 1,051,477,000 | 421,180,000 | 1,472,657,000 | 50,000,000 | 97,265,700 | 147,265,700 | 147,265,700 | 147,265,700 | 147,265,700 | 147,265,700 | 147,265,700 | 147,265,700 | 441,797,100 |
| 84A | 103동<br>1,3호<br><br>104동<br>1,2호<br><br>105동<br>1,2호 | 2 | 6 | 1,214,628,000 | 486,533,000 | 1,701,161,000 | 50,000,000 | 120,116,100 | 170,116,100 | 170,116,100 | 170,116,100 | 170,116,100 | 170,116,100 | 170,116,100 | 170,116,100 | 510,348,300 |
| | | 3 | 6 | 1,230,134,000 | 492,744,000 | 1,722,878,000 | 50,000,000 | 122,287,800 | 172,287,800 | 172,287,800 | 172,287,800 | 172,287,800 | 172,287,800 | 172,287,800 | 172,287,800 | 516,863,400 |
| | | 4 | 6 | 1,246,933,000 | 499,472,000 | 1,746,405,000 | 50,000,000 | 124,640,500 | 174,640,500 | 174,640,500 | 174,640,500 | 174,640,500 | 174,640,500 | 174,640,500 | 174,640,500 | 523,921,500 |
| | | 5 | 6 | 1,265,023,000 | 506,718,000 | 1,771,741,000 | 50,000,000 | 127,174,100 | 177,174,100 | 177,174,100 | 177,174,100 | 177,174,100 | 177,174,100 | 177,174,100 | 177,174,100 | 531,522,300 |
| | | 6~14층 | 6 | 1,283,112,000 | 513,965,000 | 1,797,077,000 | 50,000,000 | 129,707,700 | 179,707,700 | 179,707,700 | 179,707,700 | 179,707,700 | 179,707,700 | 179,707,700 | 179,707,700 | 539,123,100 |
| | | 15층<br>이상 | 3 | 1,284,405,000 | 514,482,000 | 1,798,887,000 | 50,000,000 | 129,888,700 | 179,888,700 | 179,888,700 | 179,888,700 | 179,888,700 | 179,888,700 | 179,888,700 | 179,888,700 | 539,666,100 |
| 84B | 102동2호<br>103동2호 | 2 | 1 | 1,185,534,000 | 474,879,000 | 1,660,413,000 | 50,000,000 | 116,041,300 | 166,041,300 | 166,041,300 | 166,041,300 | 166,041,300 | 166,041,300 | 166,041,300 | 166,041,300 | 498,123,900 |
| | | 3 | 2 | 1,200,669,000 | 480,941,000 | 1,681,610,000 | 50,000,000 | 118,161,000 | 168,161,000 | 168,161,000 | 168,161,000 | 168,161,000 | 168,161,000 | 168,161,000 | 168,161,000 | 504,483,000 |
| | | 4 | 2 | 1,217,065,000 | 487,508,000 | 1,704,573,000 | 50,000,000 | 120,457,300 | 170,457,300 | 170,457,300 | 170,457,300 | 170,457,300 | 170,457,300 | 170,457,300 | 170,457,300 | 511,371,900 |
| | | 5 | 2 | 1,234,722,000 | 494,581,000 | 1,729,303,000 | 50,000,000 | 122,930,300 | 172,930,300 | 172,930,300 | 172,930,300 | 172,930,300 | 172,930,300 | 172,930,300 | 172,930,300 | 518,790,900 |
| | | 6~14층 | 2 | 1,252,378,000 | 501,654,000 | 1,754,032,000 | 50,000,000 | 125,403,200 | 175,403,200 | 175,403,200 | 175,403,200 | 175,403,200 | 175,403,200 | 175,403,200 | 175,403,200 | 526,209,600 |
| | | 15층<br>이상 | 2 | 1,261,207,000 | 505,190,000 | 1,766,397,000 | 50,000,000 | 126,639,700 | 176,639,700 | 176,639,700 | 176,639,700 | 176,639,700 | 176,639,700 | 176,639,700 | 176,639,700 | 529,919,100 |

**■ 공통 유의 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사업계획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더샵 프리엘라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개정「주택법」제57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일정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10%), 중도금(1~6회차 60%), 잔금(3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잔금은 준공승인일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준공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책임이 아님)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계약 시 계약가능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십시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연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및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십시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달로그 등) 표기된 타입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약식표기) | | 44 | 59A | 59B | 59C | 74A | 74B | 84A | 84B | 합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 | - | - | - | - | 1 | 1 | - | **3**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1 | - | 1 | - | - | - | **2**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 | 1 | - | - | 1 | 1 | **3** |
| | 중소기업 근로자 | - | 1 | 1 | - | 1 | - | - | - | **3** |
| | 장애인 | 1 | - | - | - | 1 | - | 1 | - | **3**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서울특별시 거주자 (50%) | - | 1 | 1 | - | 1 | 1 | 3 | 2 | **9** |
|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 | 1 | - | - | 1 | - | 2 | 1 | **5**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3 | 8 | 1 | 2 | 7 | 2 | 6 | 2 | **31**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1 | - | - | 1 | - | 1 | 1 | **4**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1 | 2 | 1 | 1 | 2 | 1 | 3 | 1 | **12** |
| **합 계** | | **6** | **14** | **5** | **4** | **15** | **5** | **18** | **8** | **75**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br>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br>노부모부양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br>→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br>***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br>-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br>-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br>-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br>→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br>-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br>-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br>-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br>**※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구분 | | 처리방법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br>※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2-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br>■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br>■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br>■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br>■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br>■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2-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br>■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br>-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br>■ **①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 50%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br>- 단, 해당시 ·도에서 경쟁 발생시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기타지역(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br>단,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br>■ **②배점** |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3명 | 35 | |
| | | 2명 | 25 | |

| | | | |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br>***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31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br>■「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br>■ **①소득구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

| | | |
|---|---|---|
| | **(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3단계 | 우선공급<br>**(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4단계 | 일반공급<br>**(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6.03.12.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 | | | | | |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11,064,820원~ 15,490,74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13,277,784원~ 17,703,710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15,490,74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br><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2-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br>■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br>-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br>- 세대주일 것</td></tr>
<tr><td>당첨자<br>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br>■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br>■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br>-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br><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3">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3">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0"></td><td rowspan="6"></td><td rowspan="6"></td><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9">③입주자저축<br>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 colspan="6">※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r><td colspan="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br>■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br>-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br>*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비고</td><td colspan="5">■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br>-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br>■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td></tr>
</table>

## 2-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2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br>■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br>-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br>**※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br>-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br>- 세대주일 것<br>■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6.03.12.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14,384,266원~ 17,703,710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17,703,710원** |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br>**■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br>※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br>- 세대주일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br>-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br>-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청약통장<br>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1순위<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70% | 30% |
| 전용면적 85㎡ 초과 | 80% | 20%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br>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br>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 **②부양가족의**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 | | |
|---|---|---|
| | **인정 적용기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 외국인 직계존속<br>-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br>-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br>-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br>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br>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br>***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단계 | 비율 | 내용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신청대상자</th><th>신청일시</th><th>신청장소</th><th>당첨자 및 동 · 호수<br>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th></tr>
<tr><td>특별<br>공급</td><td colspan="2">기관추천,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td><td>2026.03.23.(월)<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br>(견본주택 : 10:00~14:00)</td><td>•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 앱<br>•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10 더샵 갤러리<br>☎ 02 – 2636 - 0324</td><td rowspan="4">• 일시 : 2026.04.01.(수)<br>• 확인방법<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www.applyhome.co,kr)<br>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td></tr>
<tr><td rowspan="3">일반<br>공급</td><td rowspan="2">1순위</td><td>해당지역<br>(서울특별시 2년이상 계속 거주자)</td><td>2026.03.24.(화)<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td><td rowspan="3">•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 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td></tr>
<tr><td>기타지역<br>[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br>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td><td>2026.03.25.(수)<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td></tr>
<tr><td colspan="2">2순위</td><td>2026.03.26.(목)<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td></tr>
</tabl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서류<br>(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tr><td>마이데이터<br>('청약도움e')<br>서비스</td><td colspan="2">-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br>-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td></tr>
<tr><td>공고단지<br>청약연습</td><td colspan="2">-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br>-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br>-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td></tr>
<tr><td>당첨자발표<br>서비스</td><td>청약홈</td><td>-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br>- 조회기간 : 2026.04.01.(수) ~ 2026.04.10.(금) (10일간)<br>-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td></tr>
</table>

| | | |
|---|---|---|
| | |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문자** | - **제공일시** : 2026.04.0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br>-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br>***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r>-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5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구분 |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 장소 |
|---|---|---|
| **당첨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 2026.04.02.(목) ~ 04.05.(일) |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10 더샵갤러리) ☎ 02-2636-0324 |
|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 2026.04.06.(월) ~ 04.09.(목)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장소 :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10 더샵 갤러리)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제 운영예정)

※ 사업주체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동 · 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미계약 동 · 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1> 특별공급(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 서류 ※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br><br>기관추천<br>특별공급<br>포함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외국인등록증<br>※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
| | ○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불가<br>▪ 온라인발급의 경우 기입필요 발급기준(본인발급) / 발급용도 (서류제출, 주택공급 계약용) / 제출처 : 포스코이앤씨 |
| | ○ | | 인감도장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 ▪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
| | ○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여부를 "Y" 로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br>※ 단,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경우 미제출<br>※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따라 개명이전일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청약한 경우 미 제출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포함) |
| | | ○ | 복무확인서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해외근무(단신부임)증명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본인 및 세대원의 해외체류 증빙서류 확인 ※ 단,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경우 미제출 |
| 다자녀<br>특별공급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주택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br>▪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녀" 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임신진단서 외 불가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등 (견본주택비치)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br>만 19세이상<br>세대원 |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전원 제출<br>※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가능 |
| | ○ | | 소득증빙서류 | |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전원 제출<br>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 로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신생아(2세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자녀로 신청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태아인 경우 임신진단서로 대체)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담당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임신진단서외불가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b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부동산→부동산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등 (견본주택비치) |

| | | | | | |
|---|---|---|---|---|---|
|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 (본 모집공고 자산보유기준 참고)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전원 제출<br>※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수신 문서 가능 |
| | ○ | | 소득증빙서류 | |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전원 제출<br>※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경우, "상세" 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신생아(2세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자녀로 신청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태아인 경우 임신진단서로 대체)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임신진단서 외 불가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b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부동산→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
|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분리배우자의 세대원포함)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 본인 및 세대원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본 모집공고 자산보유기준 참고)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관계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확인 ※ 본인 및 세대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 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br>▪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br>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br>▪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br>▪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등 (견본주택비치)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24.06.19. 이후 출생 예정인 태아가 있어, 출산특례로 청약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br>※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24.06.19.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어, 출산특례로 청약한 경우 |

| | | | | | |
|---|---|---|---|---|---|
| 일반공급<br>(가점제)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br>(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 | 당첨사실확인서 |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br>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확인<br>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 로 발급 |
| | |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br>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 | |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br>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 |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br>■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br>■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부적격<br>의심세대 | | ○ | 주택 및 분양권 등<br>소유여부 증명서류 | 해당 주택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 | | ○ | 당첨사실소명서류 | 해당자 |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해외근무자<br>(단신부임) | | ○ | 단신부임입증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br>■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br>■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br>※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시 생업사정 불인정<br>※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 | |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 배우자 및<br>세대원 |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비자발급내역및재학증명서 | 해당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br>※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불가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확인<br>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 대리인<br>추가서류 | ○ |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당첨자격확인 서류제출 위임용)<br>온라인 발급의 경우 기입필요 : 발급기준(본인발급)/발급용도(당첨자격확인 서류제출 위임용) / 제출처: 포스코이앤씨 |
| | ○ |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으로 간주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2.]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표2>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br>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 직장<br>② 해당 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br>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 ①재직증명서<br>②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동일직장,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 직장<br>② 해당 직장/세무서 |
| | 전년도 전직(이직)자 | ①재직증명서<br>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br>※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균소득을 산정 | ① 해당 직장<br>② 해당 직장/세무서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br>(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재직증명서(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br>②소득금액증명원 | ① 해당 직장<br>② 세무서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사업자)<br>간이과세자<br>면세사업자 | ①사업자등록증명<br>②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①, ② 세무서 |
| | 법인대표자 | ①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br>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br>③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②, ③ 세무서 |
| | 신규사업자<br>(소득입증서류 제출 불가자) | ①사업자등록증명<br>②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br>③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br>④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br>※ 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br>② 국민연금관리공단<br>③, ④ 세무서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br>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① 해당 직장/세무서<br>② 해당 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① 주민센터 |
| 일용근로소득자 | | ①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① 세무서/해당 직장 |
| 무직자<br>(만19세이상) | | ①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br>②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① 견본주택 비치<br>② 세무서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않습니다.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월별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서류제출로 소득기간을 산정)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증빙 서류**

| 해당자격 | 소득증빙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소유증빙 | ①부동산 소유현황(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br>②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 발급)<br>③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br>※ 조회기준 : 주택, 건축물, 토지 / 전국자치단체 기준 | ①, ②<br>대법원인터넷등기소<br>(www.iros.go.kr)<br>③<br>이택스(etax.seoul.go.kr)<br>위택스(www.wetax.go.kr) |
| | 자산가액증빙 | ①소유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br>②소유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br>③소유부동산이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br>-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br>-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br>※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 ① 행정복지센터<br>②, ③<br>이택스(etax.seoul.go.kr)<br>위택스(www.wetax.go.kr) |
| | 해당자 | ①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br>②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br>③종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① 행정복지센터<br>② 지자체 축산과<br>③ 토지이음<br>(www.eum.go.kr)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br>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자치단체)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br>(www.iros.go.kr)<br>② 시군구청(또는 위택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표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br>입증서류 | 근로자 | ①재직증명서 | ① 해당직장, 세무서 |
| | 자영업자 | ①사업자등록증명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br>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br>납부한 자 |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br>※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
| 소득세<br>납부<br>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 또는<br>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과거 1년 이내<br>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br>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및 없는 경우)<br>③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br>④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② 세무서<br>③, ④ 해당직장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 · 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약기간 | 장소 |
|---|---|---|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 2026.04.13.(월) ~ 04.15.(수) 3일간<br>(10:00 ~ 17:00) |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br>(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10 더샵갤러리) |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약식)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구 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본인<br>계약 시**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br>(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 ○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 ○ | | 인감증명서 | |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br>▪ 온라인 발급의 경우 기입필요 : 발급기준(본인발급) / 발급용도(서류제출, 주택공급 계약용) / 제출처 : 포스코이앤씨 |
| | ○ | | 계약금 입금증 |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 | ○ | | 부동산거래신고서 | |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수입인지(인지세) | |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씩) 납부하여야 함)<br>▪ 수입인지세액 : 1억원초과~10억원이하15만원 / 10억원초과시35만원<br>▪ 수입인지 구입처<br>- 오프라인 : 우체국 ·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br>-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 ○ |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br>(증빙자료포함) | |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br>자격검증 서류일체 |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 | | | |
|---|---|---|---|---|---|
| **대리인 계약 시** | ○ | | 위임장 | 본인 |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계약자)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br>▪ 온라인 발급의 경우 기입필요 : 발급기준(본인발급) / 발급용도(주택공급계약 위임용) / 제출처 : 포스코이앤씨 |
| | ○ | | 신분증 | 본인, 대리인 |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제 운영예정)

※ 사업주체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분양대금** | **1차 계약금(최초 계약 시)** | 국민은행 | 476101-01-449710 | 문래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포스코) |
|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 | | |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및 선택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양대금을 위 지정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수납하며 이외에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책임지지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이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입니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분양권 전매 거래시에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전매자 상호간에 합의 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또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 해야합니다.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2025.09.07.「주택공급 확대방안」및 2025.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 따른 규제지역LTV축소 등 정부정책, 본인의 대출 부적격사유 등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계약자 별로 대출한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미신청자 및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부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월의 이자정산일(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 전월의 이자정산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자정산일"이라 한다)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고, 이자정산일 이후부터는 사업주체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의무가 면제됨과 동시에 별도의 약정없이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입주증수령일 중 먼저 도래하는날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 전액을 잔금과 함께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정상의 이유로 입주지정기간이 앞 당겨 질 경우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약정기간도 이자정산일까지로 앞당겨 종료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 대출이자에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기존의 이용건수를 합산함),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적격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까지(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월이자정산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자정산일"이라 한다)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본 주택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2호 이상 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분양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 인지세 납부방법 | |
|---|---|
| **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
| **납부기한** | [분양계약] 문서작성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납부방법** | [온라인]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br>[오프라인]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
| **인터넷** |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 |

| **기재금액** | **1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불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중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씩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6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br>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br>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br>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br>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br>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br>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br>*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br>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br>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br>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br>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br>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br>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br>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br>-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br>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br>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br>**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7 발코니 확장 안내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포함]**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44** | 14,000,000 | 1,400,000 | 12,600,000 | |
| **59A** | 18,000,000 | 1,800,000 | 16,200,000 | |
| **59B** | 18,000,000 | 1,800,000 | 16,200,000 | |
| **59C** | 18,000,000 | 1,800,000 | 16,200,000 | |
| **74A** | 22,000,000 | 2,200,000 | 19,800,000 | |
| **74B** | 22,000,000 | 2,200,000 | 19,800,000 | |

| | | | | |
|---|---|---|---|---|
| **84A** | 25,000,000 | 2,500,000 | 22,500,000 | |
| **84B** | 25,000,000 | 2,500,000 | 22,500,000 | |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구분 |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최초 계약 시) | 국민은행 | 476101-01-449707 | 문래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포스코) |
| | 잔금 | | | |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견본주택에서는 직접 수납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자,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 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방발코니 및 다용도실 제외)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등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형태, 위치 , 규격, 사양, 색상, 열림(개폐)방향 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 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층세대 바닥 배관으로 인하여 천장 일부 구간에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은 입주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십시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8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관련)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 타입 | 적용대수 | 설치위치 | 제조사 | 공급금액 | 계약시(10%) | 잔금(90%) |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44 | 2대 | 거실+침실1 | LG전자 | 4,620,000 | 462,000 | 4,158,000 |
| | 3대 | 거실+침실1+침실2 | | 5,280,000 | 528,000 | 4,752,000 |
| 59A,59B,59C | 2대 | 거실+침실1 | | 4,620,000 | 462,000 | 4,158,000 |
|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 7,700,000 | 770,000 | 6,930,000 |
| 74A,74B | 3대 | 거실+침실1+주방 | | 6,820,000 | 682,000 | 6,138,000 |
| | 5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 | | 8,800,000 | 880,000 | 7,920,000 |
| 84A,84B | 3대 | 거실+침실1+주방 | | 6,710,000 | 671,000 | 6,039,000 |

| | | | | | | |
|---|---|---|---|---|---|---|
| | 5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 | | 9,350,000 | 935,000 | 8,415,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시공 및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계약 후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 및 실외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기본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은폐, 매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에어컨 실내기 선정시 각 실별로 적절한 단위부하에 따라 에어컨 장비가 선정되며 부득이할 경우 장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실내기 사이즈는 장비사양, 제조사에 따라 크기가 변경될 수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실내기 1대당 1개의 무선 리모컨을 제공하며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또는 일부세대 주방/식당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 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세대 내부 구조가 변경될 경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시공된 제품은 품절, 품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 납부계좌와 유상옵션금 납부계좌 및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 고급화**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 | 제조사 | 적용 타입 | 공급금액 | 계약시 (10%) | 잔금(90%)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키친핏 (FIT&MAX 냉장/냉동/김치) + 톨수납장<br>(냉장 : BC1L4AA.AKOR, 냉동 : BC1FAA.AKOR,<br>김치 : BC1K4AA.AKOR) | LG전자 | 59A,59B,59C / 74A,74B /<br>84A,84B | 8,250,000 | 825,000 | 7,425,000 |
| 3구 인덕션(BEI3ASB4BI) | | 전 타입 | 1,210,000 | 121,000 | 1,089,000 |

| | | | | | | |
|---|---|---|---|---|---|---|
| 전기오븐(MZ385EBTA) | | | 전 타입 | 627,000 | 62,700 | 564,300 |
| 식기세척기(DIE6PT.AKOR) | | | 59A,59B,59C / 74A,74B, / 84A,84B | 1,980,000 | 198,000 | 1,782,000 |
| 씰링팬 | 레이더 3 미니(106㎝) | 루씨 에어 | 44 | 797,500 | 79,750 | 717,750 |
| | 레이더3(132㎝) | | 59A,59B,59C / 74A,74B, / 84A,84B | 880,000 | 88,000 | 792,000 |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키친핏 유상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엘지전자 FIT&MAX 제품의 컬러선택은 불가합니다.
- 키친핏 옵션 선택시 주방가구의 형태 및 크기, 수납구성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키친핏 옵션 선택시 타입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 (냉장,냉동,김치냉장고) 및 가전,가구의 열림방향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키친핏 옵션 미선택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수 있는 가구가 설치되며 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기오븐 및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여닫이도어가 설치됩니다.
- 인덕션을 유상옵션으로 선택한 경우 기본 가스쿡탑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렌지후드는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제조사,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 인덕션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주방까지 별도의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의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는 전기차단 전용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인덕션 옵션 추가금액은 가스배관 및 차단기 설치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추후 가스사용이 필요할 경우 입주 이후 개별 입주자 비용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씰링팬은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2.0 유상옵션 선택시에만 추가 선택이 가능하며, 본 공사 시 제조사의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 추가**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 | 타입 | 적용대수 | 공급금액 | 계약시(10%) | 잔금(90%)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욕실복합환풍기 | 44 | 1대 | 605,000 | 60,500 | 544,500 |
| | 59A,59B,59C / 74A,74B / 84A, 84B | 2대 | 1,210,000 | 121,000 | 1,089,000 |
| 공기정화 살균시스템 (드레스룸 제습기) | 84A, 84B | 1대 | 1,980,000 | 198,000 | 1,782,000 |

- 욕실복합환풍기, 공기정화 살균시스템은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제조사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유상옵션 추가금액은 기본형 욕실팬 비용이 차감된 금액이며 기본 제공되는 환풍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및 공기정화 살균시스템은 각 1대당 1개의 리모컨이 지급되며 추가 리모컨은 제조사를 통해 개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공기정화 살균시스템의 설치 위치에 따라 전등 및 감지기 등의 부착물 위치 및 제품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정화 살균시스템의 광촉매필터는 5년 주기로 교체 필요하며 사용 방법에 따라 교체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고급화**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 | 옵션 품목 | 적용 타입 | 공급금액 | 계약시 (10%) | 잔금(90%)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프리미엄 키친 | 고급 주방가구(유리 전동플랩 상부장) + 엔지니어드스톤 프레스티지급 주방 벽/상판 + 3구 인덕션(LG) + 디자인후드 + 더샵 빌트인 멀티콘센트 (전열1구, 무선충전, USB) | 44 | 15,180,000 | 1,518,000 | 13,662,000 |
| | | 59A | 16,940,000 | 1,694,000 | 15,246,000 |
| | | 59B | 15,400,000 | 1,540,000 | 13,860,000 |
| | | 59C | 15,950,000 | 1,595,000 | 14,355,000 |
| | | 74A | 17,930,000 | 1,793,000 | 16,137,000 |
| | | 74B | 15,510,000 | 1,551,000 | 13,959,000 |
| | | 84B | 17,270,000 | 1,727,000 | 15,543,000 |
| | 고급 주방가구(유리 전동플랩 상부장) + 엔지니어드스톤 프레스티지급 주방 벽/상판 + 3구 인덕션(LG) + 디자인후드 + 전기오븐(LG) + 식기세척기(LG) 다이닝 우물천정 직간접 특화 조명 + 팬트리 변경 + 장식장 + 더샵 빌트인 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USB) | 84A | 24,200,000 | 2,420,000 | 21,780,000 |

-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가구 배치, 마감, 수납 구성 및 하드웨어, 악세서리 적용이 상이합니다. 74B, 84B타입 프리미엄 키친 옵션 선택시 인덕션, 후드, 전기오븐 위치가 아일랜드로 변경됩니다.
- 84A타입은 프리미엄키친 선택 시 팬트리와 주방 공간이 변경되며 다이닝 공간 우물천정을 활용한 직간접 특화조명이 설치됩니다.
- 59B, 59C, 74B, 84B타입은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거실 우물천장과 연계하여 디자인 판넬이 설치되며, 루미나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거실 조명 형태가 달라집니다.
- 다이닝장식장(주방 장식장)의 가구 내부 및 오픈장 부위에 전열기기 설치 및 사용 시 가구에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선택형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키친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주방까지 별도의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의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는 전기차단 전용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프리미엄 키친 옵션 추가금액은 가스배관 및 차단기 설치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추후 가스사용이 필요할 경우 입주 이후 개별 입주자 비용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가구 및 마감 고급화**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 | 옵션 품목 | 적용 타입 | 공급금액 | 계약시 (10%) | 잔금(90%)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프리미엄 마스터 드레스룸 | 안방 유리슬라이딩도어/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 + 드레스룸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 | 74A | 6,050,000 | 605,000 | 5,445,000 |
| | | 74B | 5,720,000 | 572,000 | 5,148,000 |
| | | 84A | 8,030,000 | 803,000 | 7,227,000 |
| | | 84B | 7,040,000 | 704,000 | 6,336,000 |
| 프리미엄 바스 | 고급도기(아메리칸스탠다드),외산 수전(한스그로헤),벽/바닥 외산 타일, 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뒷선반, 액세사리/샤워부스 색상 | 44 | 2,530,000 | 253,000 | 2,277,000 |
| | | 59A,59B,59C | 5,170,000 | 517,000 | 4,653,000 |

| | | | | | |
|---|---|---|---|---|---|
| | 변경 | 74A,74B | 5,170,000 | 517,000 | 4,653,000 |
| | | 84A,84B | 5,170,000 | 517,000 | 4,653,000 |
| 프리미엄 리빙 | 거실 대형 아트월(600X1200),<br>아트월 상부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br>거실/복도 벽 디자인넬, 복도 픽처레일, 침실1<br>히든도어 | 44 | 3,630,000 | 363,000 | 3,267,000 |
| | | 59A | 4,290,000 | 429,000 | 3,861,000 |
| | | 59B,59C | 4,730,000 | 473,000 | 4,257,000 |
| | | 74A | 4,730,000 | 473,000 | 4,257,000 |
| | | 74B | 5,170,000 | 517,000 | 4,653,000 |
| | | 84A | 4,730,000 | 473,000 | 4,257,000 |
| | | 84A<br>(프리미엄 키친<br>선택시) | 5,060,000 | 506,000 | 4,554,000 |
| | | 84B | 5,610,000 | 561,000 | 5,049,000 |
| 히든도어 | 침실2, 욕실, 세탁실 | 44 | 3,300,000 | 330,000 | 2,970,000 |
| | 침실2, 침실3, 욕실2, 발코니2 | 59A,59B,59C<br>74A,74B<br>84A,84B | 4,510,000 | 451,000 | 4,059,000 |
| 원목마루 | 국산원목 (카로) | 44 | 4,510,000 | 451,000 | 4,059,000 |
| | | 59A | 6,930,000 | 693,000 | 6,237,000 |
| | | 59B,59C | 7,370,000 | 737,000 | 6,633,000 |
| | | 74A,74B | 8,690,000 | 869,000 | 7,821,000 |
| | | 84A | 9,790,000 | 979,000 | 8,811,000 |
| | | 84B | 9,350,000 | 935,000 | 8,415,000 |
| 엔지니어드 스톤<br>상판/벽체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체(프레스티지급) | 44 | 4,950,000 | 495,000 | 4,455,000 |
| | | 59A | 5,280,000 | 528,000 | 4,752,000 |
| | | 59B | 4,950,000 | 495,000 | 4,455,000 |
| | | 59C | 4,950,000 | 495,000 | 4,455,000 |
| | | 74A | 5,390,000 | 539,000 | 4,851,000 |
| | | 74B | 4,950,000 | 495,000 | 4,455,000 |
| | | 84A | 5,720,000 | 572,000 | 5,148,000 |
| | | 84B | 5,500,000 | 550,000 | 4,950,000 |
| | 3연동 슬라이딩 유리도어 | 44,<br>59B,59C | 2,420,000 | 242,000 | 2,178,000 |

| | | | | | |
|---|---|---|---|---|---|
| 현관중문 | 여닫이 유리도어 | 59A | 2,310,000 | 231,000 | 2,079,000 |
| | 여닫이 유리도어 | 74A | 2,420,000 | 242,000 | 2,178,000 |
| | 3연동 슬라이딩 유리도어 | 74B,<br>84A, 84B | 2,530,000 | 253,000 | 2,277,000 |
| 자녀방 붙박이장 | 여닫이 붙박이장 | 44 | 1,100,000 | 110,000 | 990,000 |
| | | 59A,59B,59C | 990,000 | 99,000 | 891,000 |
| | | 74A,74B | 1,188,000 | 118,800 | 1,069,200 |
| | | 84A,84B | 1,188,000 | 118,800 | 1,069,200 |
| 다용도실 선반 | 다용도실 시스템 선반 | 59A,59B,59C | 990,000 | 99,000 | 891,000 |
| | | 74A,74B | 990,000 | 99,000 | 891,000 |
| | | 84A,84B | 990,000 | 99,000 | 891,000 |

- 프리미엄 마스터 드레스룸 선택시 안방에 유리슬라이딩 도어와 조명형 판넬 시스템가구가 설치되며, 기존 드레스룸 마감이 조명형 판넬 시스템가구로 변경됩니다. 드레스룸 내부 기본형과 옵션형의 선반, 서랍 등의 구성품과 위치가 달라지며, 적용 타입별로 구성 및 치수가 상이합니다.
- 자녀방 붙박이장 선택시 여닫이형 가구가 설치되며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도어 개폐 방향과 가구 규격/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 벽/상판 옵션은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선택 불가하며, 미선택시 기본형 주방 벽타일과 MMA 상판이 설치됩니다.
- 프리미엄 리빙 옵션 및 히든도어 옵션 추가 선택시 설치되는 히든도어는 기본형 목도어와 오픈 폭 및 도어 두께, 프레임 및 도어 사양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시 도어별로 손끼임방지용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1(안방)을 제외한 히든도어는 프리미엄 리빙 유상옵션 선택시 추가 선택이 가능하며, 히든도어 적용 범위 및 마감은 주택형 및 타입 별 도어 위치에 따라 상이하오니 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B, 84A, 84B타입 프리미엄 리빙 옵션 선택시 복도 팬트리 도어는 복도 디자인판넬과 동일한 패턴으로 마감이 변경됩니다.
- 프리미엄 리빙 옵션 선택시 아트월 상부 간접조명, 디자인판넬, 픽처레일의 적용범위는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미엄 리빙 선택시, 거실 전면 대형 포슬린타일(600*1200)은 자재 특성상 표면 휘어짐이 있어 표면이 평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재 이음매 간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 본 공사시 타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월판넬은 본공사시 판넬 나누기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리빙 옵션 미선택시 아트월은 거실 전면부에 400X800사이즈 포슬린타일이 장방형 가로로 설치됩니다. 또한 거실 후면 및 복도 벽은 지정 거실 벽지로 마감되며, 아트월 상부 간접조명(등박스 포함)과 픽처레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프리미엄 리빙 선택시 거실/복도 면의 미려함을 위해 기본형과 도어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욕실 도어 하부에 재료분리대 폭 및 형태가 변경됩니다.
- 프리미엄 리빙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은 소형 액자 및 전시품을 위한 제품으로 대형제품(벽걸이 TV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액자걸이 와이어(별도 구매 필요)의 허용 하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몸체 1개소 [길이 0.75~1.25m] 기준으로 와이어 2개 이하(와이어 당 허용하중 3kg 이내)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바스 선택시 기본형과 벽체 타일 사이즈 및 타일 나누기 위치가 상이합니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은 자재 특성상 시공이음매가 노출되며, 나누기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 미선택 시, 인조대리석(MMA) 주방상판과 주방벽체 타일마감이 적용되며 상판과 타일이 접하는 부분에는 뒷턱 또는 뒷선반이 설치됩니다. 기본형/유상옵션형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상판 전면두께(다용도실 가구 상판 참조)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됩니다.
- 중문(현관중문, 프리미엄 마스터 드레스룸)은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선택여부에 따라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공사 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목마루 옵션 선택 시, 천연자재 특성상 한 세대 내에 설치되는 마루의 나무 색상, 패턴, 질감, 마감처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하자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명 & 스마트홈 고급화**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 | 옵션 품목 | 적용 타입 | 공급금액 | 계약시 (10%) | 잔금(90%)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2.0 | 거실 우물천정 직간접 특화조명 + 침실 감성조명 + 신발장 하부 간접등 | 44 | 2,970,000 | 297,000 | 2,673,000 |
| | | 59A,59B, 59C | 3,960,000 | 396,000 | 3,564,000 |
| | | 74A,74B 84A,84B | 4,510,000 | 451,000 | 4,059,000 |
| 스마트 홈 & 시큐리티 | 안면인식 도어폰 + 지문인식도어락 + 원클릭 스위치 +보이스 컨트롤러 | 전타입 | 990,000 | 99,000 | 891,000 |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2.0 유상옵션 선택시 거실 우물천정을 활용한 직간접 특화조명(하부직하조명[색온도, 밝기제어] + 상부 간접조명[점소등 제어])이 설치되고, 침실등의 색온도와 밝기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룸 및 일부침실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 옵션계약안내문 참조)
- 루미나 옵션 선택시, 현관 신발장 하부에 간접조명이 제공되며 신발장 간접조명 ON/OFF를 위한 동작감지센서가 현관 천장에 설치됩니다.
- 거실 직간접 특화조명 하부 직하 감성조명[색온도, 밝기제어]은 월패드 및 거실스위치, 침실 감성조명(색온도, 밝기제어)은 침실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 거실우물천정 직간접 특화조명 몸체연결부위 발생되는 이음새의 수량 및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복도등 아트월면 상부 LED 간접조명 및 다이닝 우물천정 직간접특화조명은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2.0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의무)되는 제품 대신 지문인식 스마트 도어락, 안면인식 도어폰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원클릭 스마트 스위치와 보이스 컨트롤러가 제공됩니다.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미선택 시, 스마트 도어락(지문인식 기능 제외), 일반 도어폰(안면인식 기능 제외)이 제공되며, 원클릭 스마트 스위치, 보이스 컨트롤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상품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원클릭 스마트 스위치는 디자인 개발단계로 일부 디자인 및 사양(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 컨트롤러를 이용한 LG전자 가전제어는 LG ThinQ 앱에 등록가능한 Wi-Fi 가전제품에 한해 지원됩니다. (TV는 미지원)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납부 계좌**

| 구분 |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추가 선택품목금액 | 계약금(최초 계약 시) | 우리은행 | 1005-904-854126 | ㈜포스코이앤씨 |
| | 잔금 | | | |

※ 추가 선택품목은 각 품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십시오.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여 주십시오.
※ 상기 계좌로 납부 후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계약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는 수납하실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 약정금액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비확장 시 구조상의 문제로 일부 및 전체 품목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특정 품목을 선택해야만 추가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항목은 당사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 기타 주요사항

**■ 단지 및 주동계획**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단위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부 문주 계획으로 인접동의 저층세대에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하부 1층에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여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필로티 및 중앙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탑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는 2개 동 당 1개소가 계획되고,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세대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은 입체적 단지 조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와 외부는 레벨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조경석, 석축 등이 설치될수 있고,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및 석축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해 변경하지 않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조경 공간에 D/A (설비 환기구) 의 노출이 있어 보행 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 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의 책임입니다.
- 단지 내 조경 공간 및 조경 시설물 내 취사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옥외공간 (수경시설, 휴게시설, 놀이시설 등) 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설치예정 위치를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휴게시설 등의 조경 시설물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 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조경공간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난간종류,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사하셔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전 단지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및 소방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계획된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진능력은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에 해당하고 최대지반가속도는 [0.204g ]입니다.
- 아파트를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뿜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공동주택 동 표기는 101~106동으로 표기됩니다.
- 각 동 옥상층 일부구간에는 옥상조경이 계획되며,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인원의 접근으로 인근 세대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일부구간에는 휴게공간이 계획되며,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인원의 접근으로 인근 세대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일부구간에는 옥상녹화가 계획되며,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인원의 접근으로 인근 세대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에 주동 3층 이상에서 외부 돌출된 구간은 물건 적치나 이용이 불가 합니다.

**■ 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44, 59A, 59B, 59C, 74A, 74B, 84B 타입은 건립세대인 84A 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5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각실 및 엘리베이터 홀의 천장높이는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및 바닥 마감 구배 등에 따라 도면상의 치수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십시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74A, 74B, 84A, 84B 타입은 층별 입면계획에 따라 일부 세대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타입이라도 층별 입면 변화로 인해 거실 및 침실2·침실3의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방형 발코니 창호는 발코니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잠금장치 대신 수동 잠금장치가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성능등급은 관련기준 절차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주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됩니다.
-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실외기 및 전열교환기 외 피난 동선에 방해가 되는 다른 물품을 적재하실 수 없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누수 방지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이 있어 개폐시 해당세대와 하부세대에 경보 및 월패드에 연동되며 하부세대에서는 바로 위 세대의 피난구를 열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하향식 피난구는 필로티 상부세대를 포함한 최하층에는 설치되지 않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내 세탁기 설치공간은 가로 90cm, 세로 90cm 규격으로 확보하여 해당 규격 이하의 세탁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시 세탁기 용량에 따라 다용도실 도어를 탈거해야 합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특성상 본 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합니다.
- 세대 내 바닥재인 강마루의 구성 부재 중 심재(코어)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됩니다.
-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커튼박스 길이 및 높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키친핏 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각 단위실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면발코니 난간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은 같은 타입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동별, 층수 및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면 돌출 및 층수 변화에 따라 상부세대와 인접세대의 단열재 시공이 상이하여 내부 마감재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세대 내 피트 및 배관공간은 변경(전용)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미확장세대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의 천장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깊이, 등박스의 크기 등의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깊이, 형태 등)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의 발코니 확장 여부 선택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가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홈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합니다.)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OS버전은 Play Store(안드로이드) 및 App Store(iOS)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공동현관 자동 문열림 서비스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운영시스템에서 백그라운드 동작중인 앱을 임의로 중지 시킬 경우 사용자가 앱을 다시 시작하여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일 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여부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는 미제공되며, 외부 플랫폼의 음성인식기기와 연동하기 위한 플랫폼이 제공됩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실행을 통한 세대 디지털 도어락의 문열림 기능은 불가합니다.
• 외부 플랫폼 연동
- 카카오,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플랫폼과의 연동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연동시 제공되는 기능은 각 플랫폼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플랫폼 운영업체에 따라 제공 기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연동을 위한 환경 및 기능의 종류는 각 플랫폼 운영업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각 플랫폼과의 연동은 입주일로부터 3년(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의 경우 1년)간 무상이나 각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무상기간 이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금 주체는 각 플랫폼 운영사임)
- 각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플랫폼 운영업체 정책에 따릅니다.
- 각 플랫폼 연동서비스는 플랫폼 운영업체의 사정에 의해 사전 예고 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이앤씨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LG전자 가전제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 장애인용 월패드 점자 커버 및 점자 스마트 스위치는 입주 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지참)
- 장애인용 스마트홈 상품의 디자인, GUI 등은 개발 및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단지 홈페이지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무상기간 이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플랫폼 운영업체 정책에 따릅니다. 또한 운영업체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쉼표(국민DR) 서비스
단지 입주민이 참여 가능한 에너지쉼표(국민DR) 서비스는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 제도로, 전력거래소/수요관리사업자/정보제공사업자의 시스템 연계로 제공 및 운영되며, 각

운영사의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차위치 안내서비스는 제공되는 시스템 방식에 따라 구성 및 방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예약관리시스템은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현장 여건 및 단지별 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기능 또는 제공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호**

- 외부 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색상,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실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거실 및 안방 발코니 외부창호에는 유리난간 일체형 창호가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거실/침실/주방 확장부분의 외부는 3중유리 단창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경우 견본주택의 창호의 크기 및 형태가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와 상이하며, 거실/침실/주방 확장구간에 3중유리 단창으로 설계변경 및 시공 예정입니다.

**■ 세대 기계 · 전기 · 설비**

- 환기장치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에는 미디움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필터교체주기(연2회 교체 권장)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제품 선정 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실외기를 2대 이상 설치 시 전기 용량이나 환기량 부족에 기인한 장비 소손 등이 발생)
- 거실, 침실에 적용되는 냉매배관은 에어컨의 연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커버가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는 노출 시공(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의 손잡이의 방향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실외기실 공간 면적이 상이하므로 입주 후 사용 예정인 실외기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실외기 성능확보를 위해서는 입주민의 주기적인 관리와 청소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내에는 실외기 외 성능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재물도 없어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디퓨저는 본공사 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 작동을 위한 컨트롤러는 주방 스위치 상부에 설치 예정이며, 본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의 설치위치 및 환기디퓨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튼박스 길이 및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 온도조절기가 삭제될 수 있으며, 거실 또는 인근 침실과 연동되어 작동됩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음식물처리기, 옵션에 따른 추가장비가 설치되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납이 불가하거나 가림막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내부에 상부세대용(위층세대)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단위실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및 냉장고장 하부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소방법규에 따라 쿡탑용 자동식소화기 및 관련 기기류가 렌지후드 덕트 내부 또는 상부장 내부에 설치되며 소화기 유지관리를 위해 덕트의 탈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부장 내부에 설치 될 경우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렌지후드 주변 천장에 점검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작동 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배수 드레인, 선홈통, 각종 배관 등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 관리를 위해 점검구 수량이 추가되거나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천장,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 천장에 환기 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을 위해 장비와 덕트가 노출되거나 확장형 다용도실인 경우는 천장마감 및 점검구가 설치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 하여 침실 내부(시야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체 감지기는 1, 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며, 배터리 교환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 요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거실에는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보일러 설치에 의한 개별난방으로 공급됩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소방법에 근거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의 관경 및 인입경로, 가스계량기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배관이 외부에서 인입할 경우 인입을 위한 날개벽이 계획되어 견본주택과 다르게 창호 위치가 날개벽만큼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에 따라 대피공간에는 3~10층 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규격 및 재질 등은 법적 기준에 따릅니다.
- 타일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오배수관, 급수급탕분배기는 아래층 세대의 해당 위치 천장내에 설치되며 상층 세대 사용 시 생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하층 세대의 경우 동파방지를 위해 급수급탕분배기는 당해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에 2개의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난방온수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구간, 알파룸,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난방 및 온수공급을 위한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사용 시 보일러 가동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일러 가동 특성상 수전에서 온수가 나오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세대 내에 가스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에 환기장치나 연결덕트, 기타 환기덕트, 상부층 배수관 등은 부득이 천장에 노출 설치됩니다.
- 가변형 벽체 여부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제어구획, 스프링클러헤드와 환기 디퓨저의 배치와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호스 내 고인 물은 퇴수시켜 주십시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에는 전동형 빨래 건조대가 설치 되어, 별도의 조명 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팬트리에는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인근 침실 혹은 거실과 연동되어 난방이 공급됩니다.
-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 되지 않는 세대의 경우에는, 주방 빌트인 콘센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환풍기는 일괄소등 기능에서 제외되고, 주방 및 일반 가구에 설치 되는 인테리어 조명은 타입별 전원회로의 차이로 일괄소등 기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후면으로 가스배관이 관통할 경우 주방 상부장 내부 폭이 줄어듭니다.
- 일부 옵션에 따라, 세대에 적용 되는 전원 구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설비 제품(환기장치, 욕실휀, 렌지후드, 보일러, 음식물처리기 등)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은 세대 1차 처리기에서 분쇄발효 되고, 공용부 2차 처리기에서 고액분리되는 시스템입니다. 1차 처리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제조사 권장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사 권장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기기고장 또는 배수관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 기계 · 전기 · 설비**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부지 내,외부 유출입구 등)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우수처리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음식물처리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지상 구조물(환기/제연용 DA, 탑라이트, 발전기 연도, 천창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하여 인근 호실에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기,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효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 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일정 기간 동안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 인계 예정이며, 인수 인계 후 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최상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옥상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TV 안테나, 피뢰침, 기타 접지선 및 피뢰자재, 이동통신 중계기, 무선통신 보조설비, 경관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등 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일부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는 이동통신 기간사업자의 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고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104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하부 세대 중 상부 옥상에 면한 세대는 옥상배수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내진 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D, AD 등 사프트 벽 내부에는 미장/도장 등의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대 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상 발전기는 관련 법규상 일정 주기로 시험 운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운전 시 운전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및 정화조 배기가 설치되는 동의 경우 인접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공용부의 일부 기능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동주택 시스템과 연동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 현장여건, 시공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정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은 2020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벽체의 단열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18.09.01)]' 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반층상태 및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민간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40세대)이 소셜믹스를 고려하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분양광고물**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십시오.

-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 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광고물에 표현된 단지 주변은 현황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전 사업부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현황(혐오시설유무, 도로, 기반시설,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 유발요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지환경**

**- 학교**

- 본 아파트복리시설내에는「주택법」제35조,「영유아보육법」제15조및「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9조에따라어린이집이설치됩니다. 다만, 당사업지의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9조의2,「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9조의3, 보건복지부,「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용은 받지 않으며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할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초등학교는 영문초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 방법은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방법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등학교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등은 학교에서 자체 선발) 향후 배정 방법은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배정안내 : 홈페이지[학구도안내서비스(https://schoolzone.emac.kr/)]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 · 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도로 · 기반 · 유해시설 등**

- 입주 후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 여건 시설 미비, 공사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 경관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가로수, 도로, 공원, 녹지 등)은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 및 이와 연계된 단지 내 동선(산책로 등)은 추후 기반시설 계획변경이나 인허가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위치 및 폭, 선형 등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도로 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사면경사/단차구조물(옹벽 등)이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묘, 축사, 발전소, 쓰레기처리장 등이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십시오.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기반시설물의 변경으로 인해 단지내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공장용지에 인접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는 84A타입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 84A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 44, 59A, 59B, 59C, 74A, 74B, 84B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내 안방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공되지 않으며 안방발코니는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바닥 배수구 및 타일마감(실외기실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됩니다. 또한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 공사 시 분합문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져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으로,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스식 설치 불가) ※ 건조기는 전시를 위한 것으로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경관 조명은 연출된 것으로 실시공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본형 주방은 프리미엄 키친 미선택시 설치되는 가구마감재, 후드 등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하여 설치 되었으며, 실제 프로젝트에 설치되는 주방의 형태와 상이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 (도장, PET, LPM, 유리 등)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될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에 표현된 단지 주변은 현황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전 사업부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기반시설,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 유발요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 3개층으로 구성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1층이며 차량 출입구를 공동주택과 공유합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일부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공용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아파트 입주자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상호 공유하며 단지 남측에 위치합니다. 인근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7m이며, 지하2층 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3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1층 주차장 주출입구(단지 동측)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이 각 동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부출입구 및 지하2층 이하는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 여건에 따라 일부 경우 주차 후 해당 동의 승강기 홀 접근의 이동거리가 멀거나 증가, 해당 동의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전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의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출입구 편의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바닥마감은 설계에 배수 구배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는 화재안전을 고려하여 통합 배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동은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사용 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자의 입주 개시 1~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월 : 2029년 3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독서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주택법상 법적 요구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독서실 등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부대시설 (경비실, 조경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정화조, 소방시설 등)은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유하며,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클럽)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기타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골프연습장 및 헬스시설이 설치되어 인접동 및 같은동 상/하부세대 등에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비상시 일반인의 주민대피장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시행령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건축물의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능력의 표기방법 중,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구분 | 내진능력(내진1등급) |
|---|---|
|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 Ⅶ - 0.204g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2**

| 주차장 차로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6.0m | 지하1층 2.7m, 지하 2층 2.3m | 지하1층 2.7m, 지하 2층 2.3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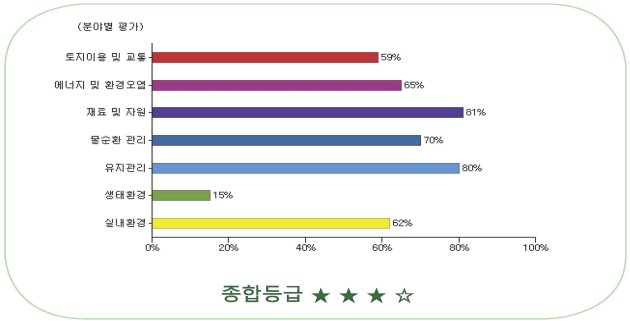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주택법」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 축 물 명 |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인 증 번 호 | G-SEED-P-2025-1043-5 |
| 건 축 주 |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인 증 기 관 | 한 국 부 동 산 원 |
| 준공(예정)일 | 2028. 09. 30. | 유 효 기 간 | 2025.11.04.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 인증 등급 | |
| 층 수 | 지하3층, 지상21층 | 인 증 등 급 | 우수(그린2등급) |
| 연 면 적 | 56,032.6300㎡ (평가 연면적: 54,942.1000㎡) | 인 증 기 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
| 건 축 물 용 도 | 공동주택 | | |
| 설 계 자 | (주)삼하건축사사무소 | |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25년 11월 04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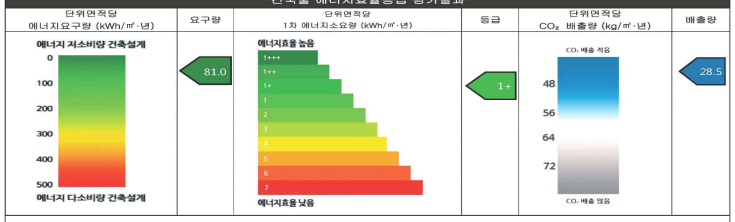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인 증 번 호 | 25-주-에-1+-0147 |
| 준공연도 | 20270731 | 평 가 자 | 김도이 |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 | 인 증 기 관 | 한국부동산원 |
| 층 수 | 지하3층 / 지상21층 | 운 영 기 관 | 한국에너지공단 |
| 연면적 | 56,032.63(㎡) | 유 효 기 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 인증 등급 | |
| 설 계 자 | (주)삼하건축사사무소 | 인 증 등 급 | 1+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
|---|---|---|---|---|
| 냉방 | 0.0 | 0.0 | 0.0 | 0.0 |
| 난방 | 42.4 | 82.1 | 62.9 | 17.0 |
| 급탕 | 30.7 | 34.7 | 25.6 | 7.1 |
| 조명 | 7.9 | 6.2 | 17.2 | 2.9 |
| 환기 | | 3.1 | 8.6 | 1.5 |
| 합계 | 81.0 | 126.1 | 114.3 | 28.5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 V ]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

2025 년 09 월 16 일

한국부동산원장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 의 설치를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 | |
|---|---|---|---|
| 설계기준<br>(제7조제2항<br>제2호)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전기부문<br>설계기준<br>(제7조제2항<br>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구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정보통신감리 |
|---|---|---|---|---|
| 회사명 | ㈜우림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 삼성유비스(주) | ㈜서광이애프 | ㈜서광이애프 |
| 감리금액 | 2,220,000,000원 | 490,909,091원 | 88,000,000원 | 242,000,000원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1282026-101-0001200호 | ₩ 139,210,088,5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
| 상호 |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포스코이앤씨 |
| 법인등록번호 | 250171 - 0033058 | 174611 - 0002979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10, 2층 202호<br>(문래동6가, 문래SKV1센터)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

**■ 견본주택 안내**

| 견본주택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10 더샵갤러리 | | | | | | | |
|---|---|---|---|---|---|---|---|---|
| 견본주택 운영기간 | 2026년 03월 20일부터 ~ 분양완료시 까지 (예약방문제 운영) | | | | | | | |
| 견본주택 운영시간 | 10:00 ~ 18:00 | | | | | | | |
| 분양문의 | ☎ 02 - 2636 - 0324 | | | | | | | |
| 주요일정 안내 | **입주자 모집공고** | **특별 공급** | **1순위 (해당)** | **1순위 (기타)** |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 제출기간** | **계약기간** |
| | '26.03.12.(목) | '26.03.23.(월) | '26.03.24.(화) | '26.03.25.(수) | '26.03.26.(목) | '26.04.01.(수) | 26.04.02.(목)~<br>26.04.09.(목) | '26.04.13.(월)<br>~ 04.15.(수) |
| 공식 홈페이지 | https://더샵프리엘라.kr | | | | | | | |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길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 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